

뚝구름 잡는 교육부 보고... 개학연기 無대책속 웬 시교육?

유은혜 부총리, 올 업무보고 논란

학교선 “방학중 보강, 현실성 없어”
부족한 학습량 보전에 업무가중 예상
수업일수 10% 감축, 즉각 이뤄져야

교육부가 올해 중점 추진할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3주 개학연기 관련 후속대책은 빠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개학 연기 이후 학생과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교육부 1순위 과제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2일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과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1월30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발생에 따라 연기해오다 이날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업무보고는 기존에 발표해 추진 중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 공정성 강화 ▲고교학점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내용은 매년 주요 추진 업무와 핵심과제 등을 적시돼 중점 추진된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주 개학 연기된 상황이고, 추후 감염병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개학 연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 대책이 가장 시급한 업무계획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

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에 국민, 교육계 우려가 큰데 관련 계획은 왜 없나”면서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수업시수 감축,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휴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방안, 방학 축소에 따른 석면공사 차질 대책 등 준비해야 할 지침과 매뉴얼, 대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반복화에 대비한 교육당국 차

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부터 3주 개학 연기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는 입학 초기 단계에서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다중 지원팀을 구성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절반을 바닥난방, 교실 내 개수대, 실내인테리어 개선 등에 나선다.

하지만 개학연기로 초등돌봄 수요와 업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부족한 학습량 보전을 위한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주 개학 연기로 부족한 학습량을 방학 중 진행키로 했으나, 대다수 학교가 방학 중 석면제거 등 학교 공사를 몰아서 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3주 개학 연기 이후 추가 연기될 경우 학교 수업일

수 10% 감축을 하겠다고 했지만, 즉각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학생 등교 시 안전도 문제”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즉시 수업일과 수업시수를 10% 감축하고, 개학 연기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일괄 구매해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각 학교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개별 구매해 이용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이를 회수해 일반에 제공했다. 하지만 개학 연기에 출근하는 교직원이 있고 초등돌봄 확대와 개학 이후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휴업 기간 중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생에 무료 제공하기로 했으나, 현재 전무한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비상경영위 중심 코로나19 신속대응

KB금융그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부가 감염병 국가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부터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부가 감염병 국가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부터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의무

금융위,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비청산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이 골자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입원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채무자에 연락 제한... ‘추심총량제’ 도입

금융위, 포용금융 구현 추진과제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편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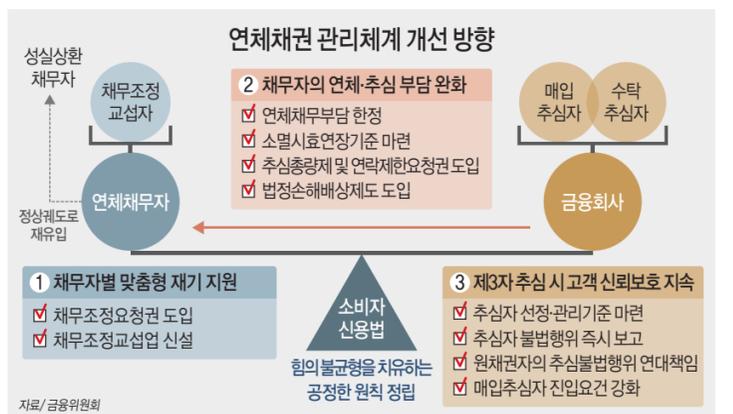
앞으로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체계가 바뀐다.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시 직장 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추심에 무게를 둔 연체채권 관리시스템이 연체 발생자를 장기연체자로 전락케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활성화 목표를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시 채무·추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재기를 모색하기보다 잠적·도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 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 상환을 요구하면서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법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이후에는 이자를 부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해 상각 이후에도 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없앤다.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의 제한을 요구하고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요소를 제거하고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도 정비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간 겸영을 금지하고, 5억원인 최소자기자본금을 확대 하는 등 진입·영업행위의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을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비중은 고령층이 41.1%, 주부 22.9%로 각각 전년(26.8%, 12.7%)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SNS, 포털 등 온라인 매

체는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속수법 관련 광고까지 적출·적발한다.

불법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신용·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도 전년(400억원) 대비 2배 이상(800억원) 확대한다. 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등 관련 법률 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중 소유자가 입원, 요양원 입소 등으로 공실이 될 경우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햇살론youth’에 1000억원을 공급해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를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